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명】 세포 노화 및 대사 기능 회복 효능을 갖는 후박나무 유래 역노화 조성물 (10-2024-0142926)의 4건

【계약금액】 선급기술료 : 금일천만원(₩10,000,000원) (VAT 별도)

경상기술료 :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연 매출액의 1%

【이전유형】 권리양도

인천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당사자】 고려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양수인: (주)현대바이오랜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인천대"라 한다),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하 "고려대"라 한다)(이하 "인천대"와 "고려대"를 통칭하여 "양도인"이라 한다)과 (주)현대바이오랜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기술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 본 계약에서 '계약기술'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양도인"의 현재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말하며, 본 '계약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본 계약에서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기술을 의미한다.

구분	발명의 명칭(기술명)	출원번호	비고
특허	세포 노화 및 대사 기능 회복 효능을 갖는 후박나무 유래 역노화 조성물	10-2024-0142926	
	세포 노화 및 대사 기능 회복 효능을 갖는 후박나무 유래 역노화 조성물	PCT/KR2024/015910	
	세노모픽 및 세놀리틱 효능을 갖는 하등작실 유래 역노화 조성물	10-2024-0180561	

고려대학교

현대바이오랜드

세포 노화 및 대사 기능 회복 효능을 갖는 호장근 유래 역노화 조성물	10-2025-0012464	
세포 노화 및 대사 기능 회복 효능을 갖는 호장근 유래 역노화 조성물	PCT/KR2025/099451	

제 2 조 (기술이전의 내용)

-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 ② 본 '계약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 양도 시점은 제3조의 기술료 입금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 ③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본 '계약기술'의 권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권리 양도 이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 납부에 따른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 3 조 (기술료)

- ① 기술료는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한다.
- ② "양수인"은 선급기술료로 총액 금일천만원(W10,000,000)(VAT별도)을 계약체결 후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청구 후 15일 이내 "양도인"이 지정한 아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일자(기한)	기술료(부가세 별도)	지급계좌
선급 기술료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금팔백만원(W8,000,000)	신한은행 100-034-84822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이백만원(W2,000,000)	하나은행 670-910012-2210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③ "양수인"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계약기술' 적용된 제품 연매출액의 1%(부가세 별도)를 매년 3월 31일 이전까지 "양도인"에게 경상기술료로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 지급기간은 '특허 존속기간 내'로 한다.

제 4 조 (기술료의 정산 및 보고)

- ① "양수인"은 '계약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품화 시작일'을 "양도인"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익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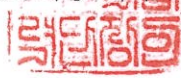
도 3월 31일까지 "양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일자(기한)	지급액(부가세 별도)	지급계좌
경상 기술료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매출액 0.8%	신한은행 100-034-848225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매출액 0.2%	하나은행 670-910012-2210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② "양수인"은 매출이 있을 경우 '계약기술'이 적용된 제품 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매출실적확인서 등)를 "양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은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양도인"이 선정한 대리인을 파견하여 본 항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술의 실시)

- ① "양도인"은 본 '계약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양수인"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양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6 조 (명칭의 사용금지)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인"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조 (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기술'에 대해 대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양도인"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양수인"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수인"이 제3조의 기술료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양수인"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9 조 (일부 무효의 효과)

-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가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 10 조 (계약의 변경)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기명날인한 합의서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 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도인"과 "양수인"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양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인"의 착오는 "양수인"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5 조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제 16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증면제 및 불가쟁)

- ① "양도인"은 본 '계약기술'의 산업재산권 유효성 또는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양수인"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로 인해 "양수인"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양수인"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징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기술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하며,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 19 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도인", "양수인"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0월 15일

"인천대"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27, 2층(송도동, 인천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기 관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 강 동 구 (인)

기술이전 계약 담당자 : 김 지 현 (인)

"고려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관 604호
기 관 : 고려대학교 세종 산학협력단
대 표 : 최 두 호 (인)

기술이전 계약 담당자 : 김 승 환 (인)

"양수인"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
기 관 : (주)현대바이오랜드
대 표 : 이 회 준

이노베이션

현대바이오랜드